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0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박수현 · 박 정
박홍배 · 윤준병 · 박홍근
조계원 · 김교홍 · 한병도
진성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,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.

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,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,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웹툰,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,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후단 중 “온라인 자료”를 “온라인 자료(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. 다만, 온라인 자료 중 「도서관법」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)”를 “도서관자료”로, “납본하여야 한다”를 “납본하여야 하고,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온라인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제7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도서관법」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
2.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
3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한다.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④ ~ ⑥ (생 략)	<u>야 하고,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<후단 삭제> 다만, 온라인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</u> <u>1. 「도서관법」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</u> <u>2.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</u> <u>3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</u>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